

[면허대여분쟁] 무자격자와 관련 없는 의사, 한의사 또는 약사 사이의 면허 또는 명의대

여 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개정안

1. 2017년 2월 국회제출 개정안의 개요 - 좌측 현행법 vs 우측 개정안

<p>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생략)</p> <p>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u>개설한</u>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u>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u></p> <p>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u>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u></p> <p>③ ~ ⑤ (생략)</p>	<p>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개설·운영한</u>----- ----- -----</p> <p>1.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제8항을 위반하여 <u>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u></p> <p>2.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u>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	---

2. 개정안 요지 및 입법취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 약사 면허

가 없는 자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의 면허 또는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약사가 다른 약사의 면허 또는 명의를 대여하여 약국을 개설한 경우(소위 2중 개설)에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고 요양기관으로부터 지급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제33조 및 「약사법」 제20조·제21조는 자격 없는 자의 요양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 있는 자가 개설하였더라도 한 의료인(약사)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위 규정에 따라 의료인(약사)이 하나의 요양기관만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4조제2항 및 제4항, 약사법 제6조는 타인에 대한 명의 또는 면허대여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음. 의료법 제4조제2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은 면허를 대여받는 의료인에 대한 금지규정이고, 제4조제4항은 면허를 대여하는 의료인에 대한 금지규정.

법률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의료인(약사)이 의료인(약사)에게 면허를 대여함으로써 실제로는 한 명의 의료인(약사)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역시 자격 없는 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로서

사무장병원의 일종으로 보아 실무상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를  
실행하고 있음.

### 3. 국회 개정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심의경과

검토의견: 자격 없는 자(즉, 의료인이나 약사 면허가 없는 자)에게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  
와 마찬가지로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 역시 의료법 및 약사법 상 불법행위이  
므로, 관련 규정 위반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징수를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절할 것으로 보임.

심의 경위: 개정안에 따른 입법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상임위 통과하지 못함. 현재 상임위 심의 중.

약사변호사, 면허대여, 2중개설, 민형사소송, 행정소송, 전략적총괄대응, 실무경력

---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